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211943 판결 [이득상환금청구]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652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211943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23. 7. 21.

판결선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피고로부터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4. 9. 5., 지급기일 2014. 12. 5.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발행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을 이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897판결,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대여금 채권 등 원인채권의 지급 확보를 위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상의 채무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어음법 제79조의 '받은 이익'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어음채무자에게 그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에게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어음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에 있어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이 예비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대여 당사자가 피고인지 C인지,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는 것인지 투자금 채권을 주장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채권의 발생시기 및 내역에 관한 구체적 주장도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무를 승인한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의 개인회생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의하면 약속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채무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채무승인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약속어음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인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계선

변경된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1.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약속어음의 소지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 2014 제 39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입니다.

액면금액 : 금 50,000,000원
발 행 인 : 1.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B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발 행 일 : 2014.9.5.
지 급 일 :2014.12.5.

2.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득의 취득

가. 유일한 채권증서

1)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금 5000만원의 지급을 위하여 유일하게 작성한 채권증서입

니다. 원고는 지급기간 경과 전에 수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요구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기 전 새로운 채권증서의 작성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이러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실현 불가능한 납골당 수 분양권을 소외 C과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으로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소외 C은 납골당 분양사기로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피고는 상술한바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자로서 그 지급의 책임이 있음은 명백하고 피고 또한 그러하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상 기재금액 금 5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과 상법상 연 5%의 이율가 소송법상 연 12%의 이득상환금과 관련손해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개인회생의 신청과 피고의 어음상 채무의 승인

1)채권자목록기재와 채무승인 확정

피고는 여러 채무를 면탈하고자 『개인회생신청』 후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피고가 약속어음상의 채무승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약속어음 기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2) 원고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의 보충권부재

상술한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금 5000만원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유일한 채권증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사건 약속어음상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별다른 청구권원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실체적으로 명확하며 동 대법원 판례 또한 피고에게 보충적 채권회수의 방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3)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

상술한 약속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는 『개인회생신청』의 채권자목록에서 명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재판부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소 결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2014. 9.5. 직접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이득상황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취지 기재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u>예비적으로</u>

1. 약속어음의 발행경위

가. 투자이익 제시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대여요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 이전 6여년 간 상호교류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2014. 9. 경 갑자기 원고를 방문하여 경기도 광주소재 'E'의 주차장 공사 등을 자신이 시공하고 있다면서 각 계약서와 도면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이득이 발생하는 계약 건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거나 심지어 자택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지속적인 방법으로 원고에게 E의 이른바 납골당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납골당 각 분골함에 대하여 피고는 물론 소외 C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피고는 수년에 걸쳐 이 사건 관련 납골당에 대한 투자를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2.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피고는 이 사건 전체취지에서 약속어음의 발행과 동 금전의 수령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그 변제를 하였다거나 약속어음의 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채무변제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과 이 사건 전체취지).

나.이득상환금의 발생여지가 부재하다는 것은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채권소멸 당시에 있어서 원인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약속어음상의 권리로서 구제방법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득상환금 청구가 정당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인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득상환금'의 행사가 제한될 뿐입니다.

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행사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에 있는 대여금 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진정한 의사로 발행한 공증약속어음입니다. 따라서 동 어음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가사 약속어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원인관계에 있는 금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대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소 결

가. 상술한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상의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입니다. 비록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여전히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으로서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대여금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동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공평과 형평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4. 결 어

그러므로 원고는 종래의 이득상환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위 대여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추가합니다.